

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--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9. 7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개정이유

- 새로운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총괄·조정 및 중앙과 지방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기구조정과 기관별 소관업무를 정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- 기구조정
 - 명칭변경 : 규제개혁담당관 → 녹색정책담당관(안 제6조제1항)

3. 참고 사항

- 경상북도 에너지정책과-241(2009.05.14)호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규제개혁담당관”을 “녹색정책담당관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제8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9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녹색성장정책 업무추진 총괄·조정
9. 국가균형발전관련 총괄 및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
10. 각종 지시사항에 관한 사항

제7조제2항제9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「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2호 중 “규제개혁담당관실”을 “녹색정책담당관실”로 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개정이유
제6조(정책기획실에 두는 담당관) ① 정책기획실에 기획예산담당관, 규제개혁담당관, 문화예술담당관, 정보통신담당관, 홍보담당관을 둔다. ② 정책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~7. (생략) <u><신 설></u> 8.~16. (생략) 제7조(자치행정국에 두는 과) ① (생략) ② (생략) 1.~8.(생략) 9. <u>국가균형발전 총괄 및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</u> 10.~14. (생략)	제6조(정책기획실에 두는 담당관) ① ----- 녹색정책담당관 ----- ----- ②----- -----. 1.~7. (현행과 같음) 8. <u>녹색성장정책 업무추진 총괄 · 조정</u> 9. <u>국가균형발전관련 총괄 및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</u> 10. <u>각종 지시사항에 관한 사항</u> 11.~19.(현행 제8호부터 제16호까지와 같음) 제7조(자치행정국에 두는 과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1.~8.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 9.~13.(현행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와 같음)	▪ 부서명칭 변경